

# 인공우주물체 등록 절차 안내

('22. 5. 23., 거대공공연구정책과)

### □ 개요

-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·제작된 인공우주물체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국내·외 우주물체 등록제 운영
- 법적근거
  - (UN조약) 「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조약」('76발효, '81가입)
  - (국내법) 「우주개발진흥법」제8조(국내등록) 및 제9조(국제등록)
  - (국내법) 「전파법」제44조(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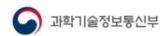
## □ 등록절차

| ① 국내 예비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 국내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③ 국제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→ 과기정통부<br><b>※ 발사전 180일 이내</b> | ⇒ | 신청인→ 과기정통부<br><b>※ 궤도진입 후 90일 이내</b> | ⇒ | 과기정통부→<br>(외교부)→UN <sup>*</sup> |

- \* UN COPUOS(Committe on the Peaceful Use of Outer Space,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)
- (국내 예비등록)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예비등록 요청
  - 신청인 : '예비등록신청서'와 '발사계획서' 제출
  - 과기정통부 : 발사계획서 검토 후 '예비등록증' 교부
  - \* 손해배상 책임부담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 시, 시정.보완 요구가능

#### 【제출자료 내용】

| 예비등록 신청서  | 발사계획서  |  |  |
|---|--|--|--|
| - 신청인(기관)에 대한 정보<br>- 우주물체명<br>- 예비등록 하고자 하는 내용 | - 우주물체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항 - 우주물체의 소유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-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-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|  |  |



- (국내 등록) 위성궤도 진입일 부터 9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등록 요청
  - 신청인 : '등록신청서' 제출
  - 과기정통부 : '등록증' 교부

#### 【제출자료 내용】

# 국내 등록 신청서- 신청인(기관)에 대한 정보- 예비등록 후 변경사항- 우주물체명- 발사일시 및 장소- 등록 하고자 하는 내용- 위성궤도 진입일시

- (변경 통보) 변경사항 발생 시, 사실 확인 후 15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
  - 신청인 : '등록변경통보서' 및 관련서류 제출
  - 과기정통부 : 변경내용 반영
  - ※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우주 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 할 수 있음
- (국제 등록) 과기정통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연합에 등록 요청
  - 신청인 : '국제 등록 신청서' 제출
  - 과기정통부 : '국제 등록 신청서'를 외교부에 제출
  - ※ <u>「전파법」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국제</u> <u>등록할 필요 없음</u>

#### 【제출자료 내용】

#### 국제 등록 신청서

-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
-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번호
- 발사 일시 및 발사지역 또는 위치
-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(노들주기, 궤도 경사각, 원지점, 근지점)
-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